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2025-1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6월 4일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이자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상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6월 내에도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진이 당장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현황

대선 이전 상법 개정 동향과 재추진 배경

지난 3월 13일 여러 상법 개정 논의 쟁점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 총회 규정 추가'만을 반영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4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¹⁾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재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7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재추진 의사를 표명했으며, 4월 22일 이소영 의원은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만 담은 원포인트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전인 6월 2일에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고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여 이사가 주주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김건 변호사
02-528-5308
gkim@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위춘재 변호사
02-528-5973
cjwee@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1)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208496)

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적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방안과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²⁾ 2210020 /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³⁾ 2210044 /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

2. 핵심 개정 내용과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나아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한국 기업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종래 이사의 의무가 추상적인 '회사 이익'에 머물렀다면, 개정 후에는 구체적인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합병,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자사주 처리 등 다양한 사안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0020)

3)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0044)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참여하는 거래나 경영상 판단에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여 투자나 고용 확대 보다는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 주주환원 정책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 공약집과 선거과정 중 후보 발언 등을 종합하면,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시로부터 일정 기간(예컨대 2년) 내에 소각을 강제하도록 하되, 독일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사주 보유한다⁴⁾를 설정하고 소각 시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자사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제약되는 반면, 주주환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EPS 개선과 실질적인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중앙 공약집 中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약⁵⁾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4) 독일은 회사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주식법 §71c(2)),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되지 못한 자기주식은 소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법 §71c(3))

5)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 공약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인수·합병 결정 시 주시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회사(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3. 실무 대응 방안

법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상법 개정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주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합병, 계열사간의 거래, 배당 등 기업 또는 지배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이익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는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과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 소통 채널의 다각화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이행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주주와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IR 활동도 기존의 기관투자자 중심에서 개인투자자와 소액주주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적인 주주간담회 개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주주제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사항에 대한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은 모두 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예고

다음호에서는 상법 개정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사항도 다룰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쟁점을 소개하고, 수정안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 방안, 보안 및 인증 체계 설계 등에 대한 법학적 및 실무에서의 논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